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자 료

광복 80
빛나는 발걸음, 새로운 길

보도	2025.8.21.(목) 조간	배포	2025.8.20.(수)
----	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

담당부서	보험사기대응단 특별조사팀	책임자	부국장	박항신	(02-3145-8880)
		담당자	선 임	양길남	(02-3145-8735)

일상생활 속 보험사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!
[제1편] 자동차 수리비 허위·중복청구 등 보험사기 사례 및 대응요령

I. 개 요

- 금융감독원은 그간 경찰, 건보공단, 보험업계 등과 유기적인 협업 및 적극적 홍보활동 등을 통한 보험사기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.
- 그럼에도 불구하고, 선량한 금융소비자들이 일상속 보험사기에 노출되어 안타깝게 보험범죄 유혹에 빠지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.
- 특히, '25.7.1.부터 사법당국에서도 보험사기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한층 강화된 보험사기 양형기준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
- 이에 금융감독원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요 보험사기 사례를 연속기획물(시리즈)로 공유·전파하여 소비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입니다.
- 금번에는 우선,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자동차 수리비·휴대품에 대한 허위청구 등 주요 보험사기 유형을 알려드립니다.

구분	자동차 수리비 등 허위·중복청구 보험사기 유형(4건)
1	종전에 지급받은 자동차 수리비의 중복청구
2	자동차 정비업체와 공모하여 자동차 수리비 허위청구
3	자동차 사고로 파손된 휴대품의 중복 배상청구
4	중고차 매매시 하자 은폐 후 수리비 허위청구

Ⅱ. 자동차보험 허위·중복청구 등 보험사기 사례

사례 ① 종전에 지급받은 자동차 수리비의 중복청구

- A씨는 대형마트에서 주차 중 차량 후면(참고1 나. ④,⑥ 부분)이 벽에 긁히는 사고가 발생하자,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 손해담보*를 활용해 甲보험사에 자동차 수리비를 청구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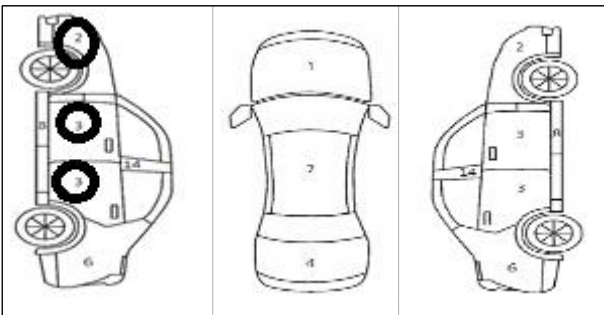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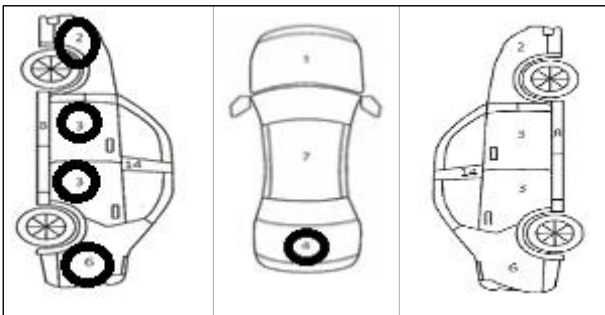
* 피보험자 본인 소유의 자동차에 사고발생시 수리비를 보상

- 이 과정에서 A씨는 과거 다른 차량과의 접촉 사고로 타 보험사로부터 대물 보상(미수선수리비*로 지급)받고 수리하지 않았던 부분(참고1 가. ②,③ 부분)을 마치 “새로운 파손”인 것처럼 기재하여, 주차 중 발생한 파손부위와 함께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습니다.

* 타인의 자동차 수리비를 추정하여 수리전에 현금으로 先지급

- 이후 甲 보험사 보험사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교통사고 및 과거 보험금 수령내역을 분석한 결과
- A씨가 이미 타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수리비를 중복으로 청구하여, 甲 보험사부터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에 통보되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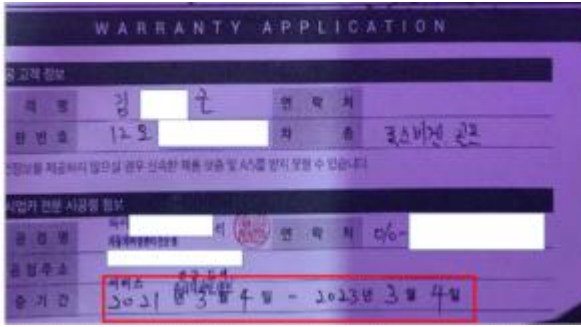
[참고1] 수리비 중복청구 보험사기 사례

가. 대물 피해범위(1차사고, 미수선)	나. 자차 피해범위(2차사고 피해)
	
⇒ 전면헨더(좌), 전면도어(좌), 후면도어(좌)가 중복청구 되었음을 확인	

사례 2 자동차 정비업체와 공모하여 자동차 수리비 허위청구

- B씨는 교차로 주행 중 상대차량에 후미추돌을 당해 파손부분의 수리를 위하여 '가' 자동차 정비업체에 차량을 입고하였습니다.
- 자동차 수리 중 '가' 정비업체의 대표는 B씨에게 이번 기회에 새로 유리막 코팅*을 할 것을 권유하면서, 해당 보험금(수리비) 청구를 위해 유리막 코팅 허위보증서를 발급해주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.
- * 스크래치, 부식·오염 방지 등의 목적으로 자동차 표면에 유리 성질의 코팅제를 도포
- B씨는 이에 응하여 '가' 정비업체 대표로부터 제공받은 유리막 코팅 허위보증서를 첨부하여, 유리막 코팅 복구명목의 비용이 포함된 자동차 수리비를 乙보험사에 청구·수령하였습니다.
- 금융감독원은 조사 과정에서 보험사에 제출된 유리막코팅 보증서가 허위임을 확인하고, 유리막 코팅을 허위청구한 B씨 및 정비업체 대표를 보험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통보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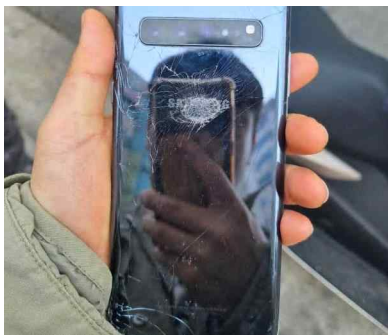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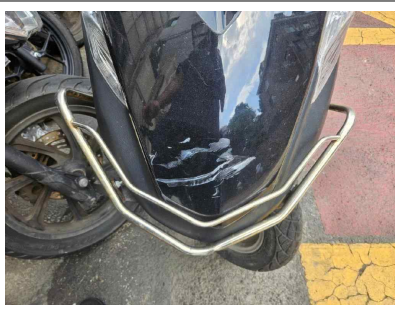
[참고2] 자동차 표면 수리비 관련 보험사기 사례

	
[차량 등록 조회]	[유리막 코팅 시공 보증서]
	
[시공 전]	[시공 후]

사례 ③ 자동차 사고로 파손된 휴대품의 중복 배상청구

- 이륜차(오토바이) 배달원 C씨는 배달업무 중 골목에서 선행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고, 대물배상 자동차보험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.
- C씨는 약관상 교통사고로 파손된 휴대품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해준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고, 예전에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이륜차와 함께 파손된 휴대폰을 보상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.
- 금번 교통사고는 휴대폰 파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보상받은 휴대폰을 각도만 달리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여, 대물보험금을 중복으로 청구하고 수령하였습니다.
- 丙보험사는 C씨가 제출한 휴대폰 청구사진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, 해당 사진이 과거 보상받은 휴대폰 사진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어 C씨를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.

[참고3] 주요 휴대품 허위청구 사례

		
[핸드폰]	[헬멧]	[블랙박스]
		
[세나(통신기기)]	[과거 사고사진(전면)]	[현재 사고사진(우측)]

사례 4 중고차 매매시 하자 은폐 후 수리비 허위청구

- 중고차 매매업자 D씨는 중고차를 수리하고 더 높은 값에 재판매하기 위하여, 본인명의로 매수한 후, 해당 차량의 하자에 대하여 중고차 성능·상태점검책임보험*으로 수리비를 청구하였습니다.

* 중고차 구입시 안내받은 중고차의 실제 상태와, 서류상 차량상태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 발생한 수리비를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보험상품

- D씨는 자동차 점검업자 E씨와 공모하여, 중고차의 기존 하자를 서류상 양호하다고 기재토록 하고, 동 하자가 마치 차량 매매 후에 발생한 것처럼 꾸몄습니다.

* 예) 엔진·미션 등 차량 하단의 누유(기존하자)를 세척해두고, 성능기록부는 “양호”로 기재

- 사실 D씨는 차량 매매일 이전의 기존하자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음*에도 丁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청구·수령한 후, 동 하자가 발생한 중고차를 수리하여 매입했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였습니다.

* 보험약관상 차량 매매·인도일 이후(보장기간)에 발생한 보험사고만 수리가 가능

- 금융감독원은 차량의 상태와 청구서류 내역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, 하자은폐 및 보험금 부당 수령 사실을 확인한 후 D씨 및 공모한 성능점검업자 E씨를 보험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통보하였습니다.

[참고4] 중고차 수리비 보험사기 사례



Ⅲ. 관련 보험사기 규모 및 처벌 법규

- **(보험사기 규모)** '24년 수리비 중복청구 등 자동차보험 허위청구* 금액은 약 2,087억원 규모로써, 그 금액이 매년 증가('22년 1,560억원, '23년 1,961억원)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.

* 대물/자차 수리비 중복청구, 피해물 중복청구, 성능보험 허위청구 등 새로운 사고인 것처럼 청구하여 "사고일자를 조작하는 경우"

- 또한, 유리막 코팅 허위청구 행위를 포함한 정비업체의 수리비 과장청구 금액은 '24년 연간 80억원 규모로 발생하였습니다.

- **(처벌법규)** 자동차 보험사기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(제8조) 위반으로서,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합니다.

- 한편, 허위보증서 작성과 같이 사문서 위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(제231조)에 해당되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가능합니다.

- 자동차 점검업자의 허위진단 및 기록부 위조는 자동차관리법상 허위점검행위(제80조)에 해당되어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가능합니다.

※ 범죄행위에 다수의 형벌이 경합하는 경우 최대 법정형의 50% 가중 가능

[참고]대법원 양형기준 개정 주요내용('25.7.1.)

- ① 사기범죄 적용범위에 보험사기 범죄를 추가하고 유형을 분류
- ② 사기범죄의 형량범위를 상향하여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 가능*
* 예) 300억원 이상 조직적 사기의 경우 최대 권고형량을 무기징역으로 상향
- ③ '고지의무 불이행'을 통한 보험사기 행위를 형의 특별감경인자에서 삭제
- ④ 보험업종 등 전문직 종사자의 직무수행 기회를 이용한 범행 가담을 형의 특별가중인자(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)로 추가

Ⅳ. 자동차 보험사기 소비자 대응 요령

☑ 자동차 수리비 중복청구시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!

- ◆ 과거 발생한 교통사고로 대물배상 보험금(미수선수리비)을 수령했던 파손부위에 대하여 자기차량손해(자차)로 중복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.
- 수리비를 아낄 생각에 이전에 발생한 흠집을 함께 처리하고자 새로 발생한 사고에 임의로 포함하면 보험사기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.

☑ 자동차 사고시 정비업체가 허위 청구를 권유하는 경우는 보험사 및 금융감독원에 적극 신고하세요!

- ◆ 자동차 정비업체의 권유에 넘어가 사고차량의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.
- 해당 교통사고와 무관한 허위서류를 발급하여 사건을 조작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권유는 단호히 거절하세요.

☑ 다른 교통사고로 인한 휴대품 피해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

- ◆ 해당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휴대품이 아닌데도 파손된 것처럼 대물 보험금을 청구(피해물 끼워넣기)하면 보험사기에 해당될 수 있으며,
- 다른 사람이 보험으로 이미 보상받았던 물품을 본인의 교통사고에 같이 청구해달라는 보험사기 유인·권유는 확실하게 거절하세요.

☑ 중고차 매매시 이미 알고 있는 중고차의 하자는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.

- ◆ 중고차 매매시 하자를 숨기고 부실점검토록 유도하여 수리비를 허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특히, 중고차 하자를 은폐하고 보험금(수리비) 청구를 권유하며 낮은 가격으로 중고차 매매를 제안하는 경우 보험사기 권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.

V. 향후 계획 및 당부사항

- 향후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될 우려가 높은 유형에 대하여 보험소비자의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,
 -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·전국렌터카공제 등과 긴밀히 협업하여 신종 자동차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하고,
 - SNS 공모 등을 통한 조직형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민생침해 보험범죄를 근절하겠습니다.

[조직형 보험사기(알선·유인·권유행위 포함) 금액별 가중처벌]

- ▶ (가중처벌) 보험사기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: 3년 이상 징역,
보험사기이득액 50억원 이상 :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
보험사기 상습범 : 형량의 50% 가중처벌
- ▶ (범죄조직) 보험사기이득액 300억원 이상 : 최대 무기징역으로 상향

- 아울러, 비상식적인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『보험사기 신고센터』에 적극 제보를 부탁드립니다.
 - 신고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드립니다.

[보험사기(알선·유인·권유·광고행위 포함) 신고 방법]

- ▶ (유선 상담·신고) ☎1332 - 4번(금융범죄) - 4번(보험사기)
 - ▶ (인터넷 접수)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상단
『민원·신고』 → 『불법금융신고센터-보험사기신고』
 - ▶ (우편 접수)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
- ※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내 『보험사기 신고센터』도 운영
(금감원 홈페이지의 보험사기 신고 화면에서도 접속 가능)